

광주교통공사 임원(상임이사) 후보 모집공고

대중교통이 편한 도시를 만들어 가는 광주교통공사에서 전문적인 식견과 역량을 갖춘 임원(상임이사) 후보를 다음과 같이 공모합니다.

2026년 09월 08일

광주교통공사 임원추천위원회 위원장

1. 공모 직위, 인원, 임기

직 위	인 원	임 기	임명권자
상임이사(기술본부장)	1명	임명일로부터 3년	광주교통공사 사장

2. 직무내용

○ 담당직무

- 사장을 보좌하며 직제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기술본부 업무 관장
 - 차량, 승무, 신호, 통신, 전기, 기계환경, 토목, 건축, 철도사업, 2호선 운영, 종합관제 등
- 이사회의 구성원으로 공사의 업무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·의결

○ 직무수행 능력요건

필요한 주요 능력	요구되는 능력 수준
① 혁신과 변화 주도 능력	크게 요구
② 리더십	크게 요구
③ 전문성	크게 요구
④ 기업가적 능력	상당히 요구
⑤ 종합적 판단 및 정책결정 능력	크게 요구
⑥ 비전과 경영전략 제시 능력	크게 요구
⑦ 의사전달 및 협상능력	상당히 요구
⑧ 윤리(청렴)성	크게 요구
⑨ 도덕성 및 준법성	크게 요구
⑩ 지역실정 및 주민정서 이해 정도	크게 요구

「지방공기업법」 제60조 제1항 각 호의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며,
 「광주교통공사 임원추천위원회 설치운영규정」 제11조 제1항의 자격요건 중
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

○ 결격사유

－ 지방공기업법 제60조(임직원의 결격사유 등) 제1항

1. 미성년자
2. 「지방공무원법」 제31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
3. 「지방공기업법」 제58조제4항 또는 제5항에 따라 해임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
4. 「지방공기업법」을 위반하여 벌금형을 선고받고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

－ 지방공무원법 제31조(결격사유)

1. 피성년후견인
2.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
3.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(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)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
4.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
5.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선고받고 그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
6.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사람
- 6의2.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「형법」 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
- 6의3.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
 - 가. 「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」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
 - 나. 「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」 제74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규정된 죄
 - 다. 「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」 제2조제2호에 따른 스톱킹범죄
- 6의4. 미성년자에 대하여 「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」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또는 「아동·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」 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·청소년대상 성범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날부터 20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
 - 가.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(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) 집행이 면제된 날
 - 나.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가 확정된 날
 - 다. 벌금 이하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날
 - 라. 치료감호를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
 - 마. 징계로 파면처분 또는 해임처분을 받은 날
7.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
8.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

○ 자격요건(공사 임원추천위원회 설치운영규정 제11조제1항 및 별표 1)

1. 「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」, 「지방공기업법」 또는 「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」의 적용을 받는 기관의 임원으로 3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
2. 상장기업에서 상임임원으로 3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
3. 대학·연구기관 등에서 부교수 또는 책임연구원급 이상으로 5년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
4. 4급상당 이상 공무원으로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
5. 교통관련분야 운영기관에서 1급 이상으로 2년 이상 또는 2급 이상으로 5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
6. 교통관련분야 경영과 관련하여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로서 위 각 호에 상당하는 자격 또는 능력이 있다고 임원추천위원회에서 인정하는 자

4 경영성과계약 및 보수

- (경영성과계약) 지방공기업법 제58조 및 제58조의2에 의거 임면권자와 체결한 경영성과계약 평가결과 등에 따라 해임·연임 가능
- (보 수) 광주교통공사 보수 및 복리후생규정 등 관련규정에 따라 체결한 연봉계약에 의거 지급

5 지원서류 접수

- 접수기간 : 2026.09.08.(화) ~ 2026.09.23.(수) 09:00 ~ 18:00
※ 점심시간(12:00~13:00), 토요일·공휴일 제외
- 접수방법 : 전자우편·등기우편 접수, 방문접수
- (전자우편) recruit@grtc.co.kr ☞ 서명 후 PDF파일 제출, 면접심사일에 원본 제출
※ 전자우편·등기우편·방문 접수는 2026.09.23.(수) 18:00시까지 도착한 서류에 한하여 유효함
- 접수장소 : 광주교통공사 총무팀(본사 4층)
【우 61999】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서구 상무대로 760 (마북동) 광주교통공사 총무팀
- 제출서류

- 지원서(사진부착), 자기소개서, 직무수행계획서, 자기소개 및 직무수행계획(요약본) 각 1부
- 개인정보 수집·이용 동의서 1부
※ 양식(작성요령 포함)은 공사 홈페이지(www.grtc.co.kr)에서 내려 받아 작성
- 최종학력증명서, 경력별 경력증명서 각 1부
- 관련 자격증 사본 각 1부(해당자에 한함)
- 기타 지원서에 기재된 내용과 관련된 증빙자료(해당자에 한함)
※ 모든 제출서류상 주민등록번호 뒤 7자리는 마스킹 또는 삭제 후 제출

6

심사방법 및 임명절차

○ 1차 서류심사

- 심사방법 : 응모자가 제출한 서류를 기준으로 임원추천위원회에서 심사
- 심사기준

조직화합과 경영성과 도출능력, 리더십, 경영혁신 의지와 추진력,
교통공사 업무 전문지식 및 이해력, 기업성과 공익성 조화능력

- 합격자 발표 : 공사 홈페이지 공고 및 합격자 개별통지(면접일정, 장소 포함)

※ 서류심사 합격자에 한하여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및 공사 인사검증절차에 따라 자기검증기술서, 증빙서류, 서약서 등 필요서류 제출(소정 양식, 별도 안내)

○ 2차 면접심사

- 면접대상 : 1차 서류심사 합격자
- 면접방법 : 직무수행계획 설명회* 후 개별 질의·응답
* 개인별 직무수행계획 등을 10분 이내 프레젠테이션
- 심사기준 : 전문성, 리더십, 경영혁신, 노사 및 직원 친화력, 윤리관 등
- 합격자 발표 : 합격자에 한해 개별통지

○ 임명절차

- 후보자 추천(임원추천위원회) → 결격사유 조회 → 임명(광주교통공사 사장)

7

기타사항

- 공직자윤리법 제18조에 의한 취업심사대상자는 관할 공직자윤리위원회의 취업심사를 받아야 하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.
- 지원서 기재 착오 또는 누락으로 인한 불이익에 대한 책임은 응모자 본인에게 있으며, 지원서 등의 허위사실 기재와 허위증빙서를 제출한 경우 또는 임용前 7대 원천배제기준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임명을 취소 할 수 있습니다.
- 지원자가 모집인원의 2배수에 미달하거나 임원추천위원회 심사결과 적격자가 없는 경우 또는 임명권자가 임원후보 재 추천을 요구할 경우에는 후보자 모집을 다시 할 수 있습니다.

- 본 공고내용은 사정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으며, 변경된 사항은 심사기일 7일 전까지 공사 홈페이지(www.grtc.co.kr)에 공고합니다.
- 「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」 제11조에 따라 최종합격이 되지 못한 지원자는 최종합격자 발표일로부터 14일에서 180일 사이의 기간까지 제출한 채용서류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.
- 직무내용, 직무수행요건, 심사기준, 평가요소 등 기타 자세한 사항은 공사 홈페이지(www.grtc.co.kr) 내 공사소개 > 경영공시 > 관련법령 및 사규(임원추천위원회 설치운영 규정)를 참고하시고, 기타 문의사항은 교통공사 총무팀 (☎ 604-8061)으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.

임용 前 7대 원천 배제 기준

(제9조 관련)

1. 다음 중 어느 하나라도 해당할 경우에는 임용을 배제함

1. 병역기피	▶ 본인 또는 직계비속이 도망, 신체손상, 입영기피 등 병역법 위반으로 처벌을 받은 경우 ▶ 본인 또는 직계비속이 병역회피 목적으로 외국국적을 취득하거나 우리 국적을 포기한 경우 ▶ 본인 또는 직계비속이 고의적 또는 불법적으로 병역을 면제받거나 보직 등 복무와 관련하여 특혜를 받은 경우
2. 세금탈루	▶ 본인 또는 배우자가 부정한 방법으로 조세를 포탈하거나 조세의 환급, 공제를 받아 조세법 처벌법 위반으로 처벌을 받은 경우 ▶ 본인 또는 배우자가 국세기본법 및 지방세기본법에 따라 고액·상습 체납자로 명단이 공개된 경우
3. 불법적 재산증식	▶ 본인 또는 배우자가 <공직자윤리법 및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> 등을 위반하여 부동산 및 주식·금융거래와 관련하여 미공개 중요 정보를 이용하거나 타인이 이용하게 한 경우
4. 위장전입	▶ 부동산 투기 또는 자녀의 선호학교 배정 등을 위한 목적으로 2회 이상 위장전입을 한 경우
5. 연구 부정행위	▶ 연구윤리 확보를 위한 지침이 제정된 07년 2월 이후 학위논문(박사), 주요 학술지 논문(해외: SCI 및 SSCI급, 국내: 등재지 이상), 공개 출판 학술저서에 대해 연구 당시 연구자가 소속된 기관에서 표절·중복게재 또는 부당 저자 표시 등 연구 부정행위가 있었다고 판정한 경우 ▶ 연구 부정행위 또는 연구비 부정사용으로 처벌된 사실이 있는 경우
6. 음주운전	▶ 최근 10년 이내에 음주 운전을 2회 이상 한 경우 ▶ 최근 10년 이내 음주 운전을 1회 한 경우라도 신분 허위진술을 한 경우
7. 성 관련 범죄 등	▶ 국가 등의 성희롱 예방 의무가 법제화된 1996년 7월 이후, 성 관련 범죄로 처벌받은 사실이 있는 등 중대한 성 비위 사실이 확인된 경우

2. 위 1.~7. 에 열거한 기준에 미달하더라도 각각의 비리와 관련하여 고의성, 상습성, 중대성 등이 있는 경우에는 임용을 배제함

3. 임용 예정 직무와 관련된 비리와 관련해서는 엄격한 기준을 적용함

(세금탈루-재정·세제·법무분야 등 / 연구부정-교육·연구 분야 등 / 성 관련-인권·여성분야 등)